

행정기관명

수신  
(경유)

제목 매수대금 납부최고서

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귀하(귀 법인)가 매입한 아래 재산의 매수대금을 「지방세징수법」 제92조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합니다. 아래의 납부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하고, 귀하의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,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와 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-|
| 매수인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<br>(법인명) |   | 생년월일<br>(법인등록번호)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<br>(영업소) |   |                  |    |
| 체납자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<br>(법인명) |   | 생년월일<br>(법인등록번호)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<br>(영업소) |   |                  |    |
| 매각재산의 표시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|
| 납부할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금 | 원(금              | 원) |
| 「지방세징수법」 제92조제4항에 따른 당초 납부기한 |             | 년 | 월                | 일  |
| 납부최고기한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년 | 월                | 일  |

끝.

발신명 외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 )

팩스번호( 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 구분